

보도시점 2023. 12. 19.(화) 13:00 / 배포 2023. 12. 19.(화) 08:30

#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현안 보고 -

# ※ 엠바고 해제: 12월 19일(화) 13:00부터 보도가능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국무 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 〈 추진 배경 〉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 <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례 >

- [ 사례 ①]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 우대
  - → 경쟁사(마카롱 택시 등)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 또는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
- [사례 ②]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
  - → 원스토어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 구글 독점력은 강화(점유율 약 80% → 90%)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및 독일에서는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다.

\* 유럽연합(디지털시장법 제정, '23.5월 시행), 독일(경쟁제한방지법 개정, '21.1월 시행)

## 〈 주요 내용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임시전담팀(TF)을 구성하여('23.1월~6월 운영) 9차례 논의하였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임시전담팀(TF) 논의내용과 해외 입법례, 그간 법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멀티호밍 제한 :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예정이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 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예)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 < 기대 효과 >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루어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 추진을 통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 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 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 및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설민 (044-200-4365)
		담당자	사무관	권영재 (044-200-4371)
			사무관	김경원 (044-200-4367)
			사무관	박하은 (044-200-4369)



